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898
----------	------

2017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김용석(도봉) 의원(찬성자 9명)
- 나. 제안일 : 2017년 6월 8일
- 다. 회부일 : 2017년 6월 13일
- 라. 상정일 : 제27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8월 30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석(도봉)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국가직공무원 시험관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매년 인재개발원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2014.11.1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직공무원 시험 주관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관되었으므로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 다. 기타 : 입법예고(2017. 6. 16. ~ 6. 23) 결과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로 분리)으로 국가직공무원 시험 주관사무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2017년 7월 국민안전처 통합)에서 인사혁신처로 이관되어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당지급) 시험관리수당은 <u>행정자치부장관</u> 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제3조(수당지급) ----- <u>인사혁신처장</u> ----- ----- ----- -----.

- 동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의 시험관리수당 지급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안전행정부 인사실”이 2014년 11월에 이미 “인사혁신처”로 독립하여 주관부서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 서울시의 시험관리수당 등의 지급기준(참고 1 서울시 시험관리수당 등 지급기준 참조)을 살펴보면, 문제출제, 문제검증, 출제관리, 시험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의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 및 타 시·도와 유사하게 지급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 시험관리수당 등의 기준을 인사혁신처와 타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하게 규정함으로써 통일성있는 운영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르면 시험관리수당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규칙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지방공무원임용령」
<p>제48조(시험위원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5.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p>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이 영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p> <p>⑤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시험관리관·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p>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수당지급) 시험관리수당은 <u>행정</u> <u>자치부장관</u>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 여 지급한다.</p>	<p>제3조(수당지급) ----- <u>인사</u> <u>혁신처장</u>----- ----- ----- -----.</p>